

직제 규정

제정	1993. 3. 10.	개정	1994. 1. 13.
개정	1999. 4. 13.	개정	2000. 9. 1.
전문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3. 11. 15.	개정	2014. 3. 1.
개정	2014. 7. 25.	개정	2014. 10. 20.
개정	2015. 3. 31.	개정	2015. 7. 1.
개정	2015. 8. 31.	개정	2016. 3. 1.
개정	2016. 6. 23.	개정	2016. 7. 28.
개정	2016. 12. 23.	개정	2017. 5.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중암학원 정관 제73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대학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제에 관하여 우리대학의 각종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원 및 사무분장) 각 직제의 정원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임기) 이 규정이 정하는 교원의 보직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지침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7.1.>

제 2 장 교원 및 직원

제5조(총장 등) ① 우리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실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 2015.7.1., 2016.12.23.>

③ 대학교에 업무분장에 따라 2인 이내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하되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사무직원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하되 각 직종의 직급별 정원은 법인정관 제77조 <별표2>에 의하며 행정처 및 팀의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조교는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며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교원 및 사무직원, 조교 외에 필요에 따라 강의전담교수, 겸임교원, 객원교수, 초빙교원, 명예교수, 석좌교수, 외래강사와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3.>

- ⑧ 총장은 별도로 총장을 보좌할 수 있는 기구 및 총장보좌역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7.1.>
- ⑨ 총장보좌역은 전·현직 교직원 또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여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7.1.>

제 3 장 대학본부

제6조(대학본부) ① 대학본부에는 교학처, 입학홍보처, 산학협력처, 취·창업지원처, 기획조정실, 총무처, 국제교류처, 대외협력사업본부를 둔다. <개정 2014.3.1., 2014.10.20., 2015.7.1., 2016.7.28.>

② 처장, 실장 및 센터장,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한다. 단, 총무처장 및 본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16.7.28.>

③ 교학처에는 교무지원팀, 학생복지팀, Humanitas교육센터, 보건실, 장애학생지원센터, 성교육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4.3.1., 2015.7.1., 2015.8.31., 2016.12.23.>

④ 입학홍보처에는 입학팀, 홍보팀, 대경진로직업체험교육센터, 대학발전운동센터를 둔다. <개정 2015.8.31., 2016.3.1., 2016.6.23., 2016.7.28.>

⑤ 삭제 <2014.3.1.>

⑥ 산학협력처에는 산학협력지원팀, CO-OP현장실습지원센터, 대경드론리서치센터, 대경문화기술센터를 둔다. <개정 2014.3.1., 2015.7.1., 2016.3.1., 2016.7.28., 2016.12.23.>

⑦ 기획조정실에는 전략팀, 기획조정팀, DK인증센터, 영상콘텐츠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4.3.1., 2015.7.1., 2016.7.28.>

⑧ <삭제 2014.3.1.>

⑨ 총무처에는 총무팀, 관리팀, 경리팀을 둔다. <개정 2014.3.1., 2015.7.1.>

⑩ 국제교류처에는 국제교류팀, 글로벌어학센터를 둔다. 그리고 별도로 특임교수단,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 센터에는 업무팀을 둔다. <개정 2013.7.1., 2014.3.1., 2014.7.25., 2014.10.20., 2015.7.1.>

⑪ 취·창업지원처에는 취업지원팀, 창업지원팀, 사회맞춤형주문식교육사업단,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창업보육센터를 둔다. <신설 2016.7.28.> <개정 2016.12.23.>

제7조(직무대행·협조) ①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총장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② 총장 및 부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③ 부서장은 그 소관 업무가 타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때에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부·학과

제8조(학부·학과) ① 법인정관 및 학칙에 의하여 학부 및 학과를 둔다.

② 학부 및 학과는 학칙 [별표2]와 같다.

1. 삭제 <2014.3.1.>
2. 삭제 <2014.3.1.>
3. 삭제 <2014.3.1.>
4. 삭제 <2014.3.1.>
5. 삭제 <2014.3.1.>
6. 삭제 <2014.3.1.>
7. 삭제 <2014.3.1.>
8. 삭제 <2014.3.1.>
9. 삭제 <2014.3.1.>
10. 삭제 <2014.3.1.>

③ 학부장 및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단, 학부(과)특성에 따라 총장이 따로이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7.1.>

④ 본 과정 이외의 학과 및 전공에는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단, 학부(과)특성에 따라 총장이 따로이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7.1.>

⑤ 총장은 필요시 학부(과)를 계열(단과대학)별로 분류하여 학(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4.3.1.>

제 5 장 부속기관

제9조(부속기관) ① 부속기관은 디지털정보센터, 전산정보센터, 방송국, 학보사, 직장민방위소대, 교수학습지원센터, 글로벌빌리지, NCS지원센터, 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를 둔다. <개정 2013.7.1., 2013.11.15., 2014.3.1., 2015.3.31., 2015.7.1., 2016.7.28., 2016.12.23.>

② 디지털정보센터에는 수서팀을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

③ 전산정보센터에는 정보관리팀을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

④ 방송국에는 국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7.1.>

⑤ 학보사에는 주간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⑥ 삭제 <2016.7.28.>

⑦ 직장민방위소대에는 대장을 두며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⑧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7.1.>

- ⑨ 삭제 <2015.7.1.>
- ⑩ 삭제 <2015.7.1.>
- ⑪ 글로벌빌리지에는 총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4.3.1.>
- ⑫ 삭제 <2015.7.1.>
- ⑬ 삭제 <2015.7.1.>
- ⑭ NCS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12.23.>
- ⑮ 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12.23.>

제 6 장 부설기관 [제목개정 2014.3.1.]

제10조(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에는 행정실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

제11조(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에는 행정실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

제12조(기타 부설교육기관) ① 기타 교육(공공)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약체결에 의하여 특정시설이나 사업을 수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부설교육기관의 기관장은 총장이 임면한다.

③ 기타 부설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기관별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의2(남해게스트하우스) 남해게스트하우스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4.3.1.]

제12조의3 삭제 <2014. 10. 20.>

제 7 장 부설연구소 및 부설센터

제13조(부설연구소) ① 우리대학에 식품과학연구소, 향장연구소, 건강과학연구소, 양조연구소, 국제크루즈산업연구소, 한국군사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3.7.1., 2013.11.15., 2015.7.1., 2016.12.23., 2017.5.23.>

② 각각의 부설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제 8 장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제14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대경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총장이 임면한다.

③ 운영에 따른 하부조직 구성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과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경대학교에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 학교기업에는 총괄교수 및 대표책임교수를 두며, 총장이 임면한다.

③ 총괄교수는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학교기업의 인사 및 운영을 관장하고, 대표책임교수는 학교기업을 대표하여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④ 운영에 따른 하부조직 구성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대학평의위원회

제16조(대학평의위원회) ①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정관 제31조의2 및 학칙 제78조의2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② 삭제 <2014.3.1.>

③ 삭제 <2014.3.1.>

④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0 장 위원회

제17조(교무위원회) ① 우리대학의 교육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삭제 <2014.3.1.>

③ 삭제 <2014.3.1.>

④ 교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기타 위원회) ① 우리대학의 주요 업무를 의결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1 장 기타 조직

제19조 삭제 <2016.12.23.>

제20조 삭제 <2013.11.15.>

제21조(사업단 등) ① 본 대학교에 각종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장 직속으로 사업단을 둘 수 있다.

② 사업단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5.23.]

부칙

① 이 규정은 199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 실시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이 규정은 199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199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6조(대학본부) ①, ⑦의 기획처 명칭은 ‘기획조정실’로 개정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